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10 선고 2019가단523829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강대희

피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20. 2. 4.

판결 선고 2020. 3. 10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,607,544원 및 그 중 78,598,449원에 대하여 2019. 8. 28.부터 2019. 12. 27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3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,

(1)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9. 2. 14. 접수 제91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

(2)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9. 2. 14. 접수 제9185-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2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3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상근

별지